

의안번호	제 101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8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8일
발 의 자 : 김영주, 정상교, 최경천,
김국기, 박성원, 임동현,
이수완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심의위원회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제159조

나. 기금의 조성 각 호 중 3호(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을 삭제(안 제5조)

다.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용어 변경(안 제8조) 및 일부 조항 삭제(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을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필요한 기금”으로,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을 “위원회는”으로,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다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교육청</u> <u>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u> <u>운용에 관한 조례</u></p>	<p><u>충청북도교육청</u> <u>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u> <u>운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p>제8조(회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p>	<p>제1조(목적) ----- ----- <u>제159조</u>----- ----- ----- ----- -----.</p> <p>제5조(기금의 조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p>제8조(<u>회계관계공무원</u>) ----- -----</p>

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 2. (생략)

3.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제6조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회계관계공무원-----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

<삭 제>

<삭 제>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과장, 정책기획과장, 학교혁

<신 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과장, 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삭 제>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삭 제>

나. 정부 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삭 제>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